

부모의 권리

메릴랜드주 절차상 보호 규약 통지
영유아 조기 개입/ 취학전 아동 특수 교육
및 특수 교육



2017 년 7 월 개정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교육/조기개입 서비스부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EARLY INTERVENTION SERVICES

부모의 권리
메릴랜드주 절차상 보호 규약 통지
영유아/취학전 아동 특수 교육
2016 년 7 월

© 2013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본 규약서는 **IDEA Part C Grant #H181A120124** 와 **IDEA Part B Grant #HO27A012035A** 에 근거해 미국 교육부 산하 특수 교육 및 재활 서비스청의 지원을 받아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에서 개발 및 제작하였습니다.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에서는 미국 교육부 산하 특수 교육 및 재활 서비스청, 특수 교육 프로그램 사무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없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복사 및 공유를 적극 권장합니다. 복사 및 공유 시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가 출처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 주 교육부는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출신 국가, 종교, 장애 여부를 근거로 고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제공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주 교육부 정책에 대한 질문은 평등 보장 및 준법 감시국(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Branch) 전화번호 (410) 767-0433 또는 팩스 (410) 767-043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MarylandPublicSchools.org. 미국 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의거하여 요청이 있을 시 본 규약서를 장애인용 문서로 제공해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관해서는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는 전화번호 (410) 767-0242 또는 팩스 (410) 333-1571 로 문의하십시오.

캐런 B 새먼, 박사 (Karen B. Salmon, Ph.D.)
메릴랜드 주 교육감 (State Superintendent of Schools)

거프리 M. 스미스, Jr. (Guffrie M. Smith, Jr.)
위원장 (President)
메릴랜드 주 교육위원회 (State Board of Education)

캐롤 A. 윌리엄슨, 교육학 박사 (**Carol A. Williamson, Ed.D.**)
주 교육 및 학습 부교육감 (Deputy State Superintendent for Teaching and Learning)

마셀라 E. 프란츠코브스키 M.S. (Marcella E. Franczkowski, M.S.)
메릴랜드 주 부교육감 (Assistant State Superintendent)
특수교육/조기개입 서비스부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Early Intervention Services)

래리 호간 (Larry Hogan)
주지사 (Governor)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Early Intervention Services
200 West Baltimore Street, 9th floor
Baltimore, Maryland 21201
410-767-0249(전화)
410-333-1571(팩스)
www.marylandpublicschools.org

목차

| | |
|---|----|
| 절차상 보호 계약 통지 | 1 |
| 모국어..... | 1 |
| 이메일..... | 2 |
| 사전 서면 통지 | 2 |
| 고지 사항..... | 2 |
| 서면 통지서의 구비 요건..... | 2 |
| 동의..... | 3 |
| IFSP 서비스에 국한한 부모의 동의..... | 3 |
| IFSP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동의..... | 3 |
| IFSP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 3 |
| 초기 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 4 |
| IFSP 에 국한한 대리 부모 | 4 |
| 주 정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초기 평가 관련 특별 규정 | 5 |
|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 | 5 |
|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의 철회 | 5 |
| IFSP 서비스의 아동에 국한한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 6 |
| IFSP 서비스의 아동과 청소년에 국한한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 |
|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문서화 | 6 |
| 기타 동의 요건..... | 6 |
| 대리 부모 | |
| 주 정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초기 평가 관련 특별 규정 | |
| 외부 교육 평가..... | 7 |
| 정의..... | 7 |
| 공립 교육 기관의 기준..... | 7 |
| 공공 비용으로 외부 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 7 |
| 부모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되는 외부 평가 | 8 |
| 행정 판사(ALJ)에 의한 평가 요청..... | 8 |
| 개인 정보 보호..... | 8 |
| 정의..... | 8 |
| 보호 계약..... | 9 |
| 동의..... | 9 |
| 기록 열람권..... | 9 |
| 열람 사실에 대한 기록..... | 10 |
| 부모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 10 |
| 정보 파기 절차..... | 11 |
| 아동의 권리..... | 11 |
| 징계 관련 정보..... | 11 |
| 장애 아동의 징계 | 11 |
| 정의..... | 12 |
| 교직원의 권한 | 12 |
| 장애 징후 판단..... | 12 |
| 배치 변경..... | 13 |
| 임시 대안 교육 시설..... | 13 |
| 징계 이의 신청..... | 14 |
| 장애 여부를 아직 판정받지 않은 아동 | 14 |
| 법 집행 기관과 사법 당국에의 의뢰 및 이들 기관의 조치 | 15 |

| | |
|--|----|
| 부모가 독자적으로 공공 비용으로 아동을 사립 학교에 보낸 경우 | 15 |
| 배상 한도 | 16 |
| 성년이 될 시 부모의 권리 이양 | 16 |
| 의견차 해결 | 17 |
| 조정 | 17 |
| 조정 절차 권장을 위한 회의 | 18 |
| 주 정부 상대 이의와 적법 절차 이의의 비교 | 18 |
| 주 정부 상대 이의 | 18 |
| 주 정부 상대 이의의 해결 | 20 |
| 적법 절차 심의회에 제기된 주 정부 상대 이의 신청의 해결 | 20 |
| 적법 절차 이의 | 20 |
| 적법 절차 이의서의 구비 요건 | 20 |
| 적법 절차 이의에 대한 답변 | 21 |
| 통지의 충분 요건 | 21 |
| 소송 진행 기간 동안의 아동 배치 상태 | 22 |
| 문제 해결 과정 | 22 |
| 30 일 해결 기간 내 문제 조정: | 23 |
| 문제 해결 합의 | 23 |
| 적법 절차 심의회 | 24 |
| 행정 판사(ALJ) | 24 |
| 적법 절차 이의 대상 문제 | 24 |
| 심의회 관련 권리 사항 | 24 |
| 추가 정보 공개: | 24 |
| 부모의 권리 | 25 |
| 심의회 판결 | 25 |
| 별도의 적법 절차 이의 제기: | 25 |
| 심의회 일정 및 편의 | 25 |
| 신속 일정: | 25 |
| 심의회 판결의 최종 효력 | 26 |
| 항소 | 26 |
| 변호사 비용 | 26 |
| 첨부 IDEA 분쟁 해결 과정 비교표 | 28 |

절차상 보호 규약 통지

이 절차상 보호 규약 통지에서는 귀하의 권리 사항에 대해 귀하의 모국어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상 보호 규약 통지는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을 통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 및 가족과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 아동/학생에게 해당됩니다.

이 문서에 나타나 있는 보호 규정은 2004년 장애인 교육 개선법(IDEA 2004)(20 U.S.C. §1400 이하 참조)과 다음 장의 COMAR(메릴랜드 규정 코드: COMAR 13A.05.01, COMAR 13A.08.03, COMAR 13A.13.01)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각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IDEA 2004 요건에 부합하는 절차상 보호 규약을 수립, 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공립 교육 기관이란 아동에게 IFSP 나 IEP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을 통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 및 가족의 경우 절차상 보호 규약의 사본이 사전 서면 통지와 함께 부모님께 전달됩니다.

IEP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경우 절차상 보호 규약서는 일 년에 1회 부모님께 전달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공립 교육 기관에서 따로 별도의 문서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 초기 조회시 또는 부모의 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 학기 중 주 정부 서면 이의서가 처음 접수되었을 경우
- 학기 중 적법 절차 이의가 처음 접수되었을 경우
- 징계 조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공립 교육 기관의 웹 사이트가 있을 경우, 절차상 보호 규약 통지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 보호 규약서에서는, 부모의 권리에 대해 부모의 모국어로(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모국어나 의사 소통 모드가 문자화할 수 없는 경우,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절차상 보호 규약을 구두로, 또는 부모의 모국어나 의사 소통 모드로 전달해드릴 것입니다.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해당 통지가 적절히 전달되어 해당 부모가 절차상 보호 규약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증빙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모국어

부모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국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아동의 경우, 아동의 부모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 아동과의 직접적인 접촉(아동 평가 포함)에 있어서, 아동이 가정이나 학습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청각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문자화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의사 소통 모드는 해당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수화, 점자, 구두의 의사 소통).

부모는 본인 아동의 완성된 IFSP 또는 IFSP 를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사용하는 모국어를 지역 학교 시스템 재학생의 일 퍼센트 (1%)가 사용할 경우, 해당 직원은 부모의 요청일로 부터 30 일 이내에 그 언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일 퍼센트 번역 요구 조건은 동 문서의 중재 항목에서도 논의됩니다.

이메일

이메일이 가능한 경우, 부모는 통지 사항을 이메일로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립 교육 기관에서 이메일 옵션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메일로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서면 통지
- 절차상 보호 규약 통지 그리고
- 적법 절차에 대한 요청과 관련한 통지 사항.

사전 서면 통지

부모는 아동의 조기 개입 서비스나 특수 교육과 관련한 공공 교육 기관에 대해 문서화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지 사항

공공 교육 기관에서 부모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는 공공 기관에서 매번 다음을 제안, 거부, 시작, 또는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 장애 여부 판정
- 평가
- 교육 프로그램
- 학교 배치
- 무상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제공, 또는
- IFSP 서비스를 통해 아동과 아동의 가족에 대한 조기 간섭 서비스의 제공, 또는
- IEP 를 통해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통지가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와 관련될 경우,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동시에 서면 통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통지서의 구비 요건

IFSP 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가족의 경우 서면 통지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 또는 거절하는 행위를 서술해야 합니다.
- 행위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 절차상 보호 규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IEP 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가족의 경우 서면 통지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립 교육 기관에서 제안 또는 거절하는 행위의 내용을 서술해야 합니다.
-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해당 행위를 제안 또는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해당 행위를 제안 또는 거절하기로 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각각의 평가 절차, 사정, 기록,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부모가 IDEA 의 절차상 보호 규약에 의거하여 보호받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공립 교육 기관에서 제안 또는 거절한 행위가 평가를 위한 초기 조회가 아닐 경우, 절차상 보호 규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부모에게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 부모가 IDEA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아동의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 팀이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에서 고려했었던 기타 선택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거절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해당 행위를 제안 또는 거절한 기타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동의

부모의 동의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조기 개입 아동 평가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평가 동의에 대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동의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부모가 동의한 활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자신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 모드로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조치에 대한 내용을 부모가 잘 이해하고 이에 서면으로 동의했으며, 동의서에는 해당 조치와 공개될 기록의 목록(기록이 있는 경우),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모의 동의는 자발적인 것이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동의를 철회할 경우, 공립 교육 기관에서 동의를 받은 시점과 그 철회 시점 사이에 발생한 내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 받은 후에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다는 서면 동의를 철회할 경우 공립 교육 기관은 동의 철회 때문에 아동의 교육 기록을 수정하여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한 참조 서류를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IFSP 서비스에 국한한 부모의 동의

다음 시기 이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동과 가족의 모든 선별검사, 평가 및 사정을 시작하기 전.
- 조기 개입 서비스 및 추가 사정의 제공 시작 전.
-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 지역의 담당 기관에서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이용할 수 있는 평가 및 사정 또는 서비스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 서면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이 그러한 평가 및 사정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IFSP 서비스에 국한하여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자격 요건이 되는 아동의 부모는 자기 자신, 자녀,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를 수용 또는 거부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먼저 수용한 후 다른 개입 서비스에 대한 위협 없이 이를 나중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3세 이상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경우, 교육적인 부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교육적인 부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초기 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해당 아동의 조기 개입 서비스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격 유무 결정을 위해 초기 평가를 수행하기 이전,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제안 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근거가 되는 아동의 장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실행하는 초기 평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아동에게 조기 개입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아동의 IFSP 또는 IEP 팀에서 권장한 조기 개입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부모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동의 또는 판결을 얻기 위해 조정이나 적법한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모가 조기 개입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을 때
- 부모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에 대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부모가 아동의 첫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경우 또는 부모가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립 교육 기관은 아동을 위한 무상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 공립 교육 기관은 아동을 위해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 회의 또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를 갖거나 IFSP/IEP 를 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의 철회

공립 교육 기관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 제공하기 시작한 후 언제라도 아동의 부모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립 교육 기관은 동의 취소로 인해 아동의 교육 기록을 수정하여 아동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받기에 대한 추천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립 교육 기관은 해당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 이를 중단하기 전에 모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이 있었음을 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 공립 교육 기관은 서비스가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합의 또는 판결을 획득하기 위해 조정 또는 적법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립 교육 기관이 아동에게 추가적인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FAPE 제공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 공립 교육 기관은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IEP 팀 회의를 개최하거나 IEP 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를 철회로 공립 교육 기관에서 동의를 받은 시점과 그 철회 시점 사이에 발생한 내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IFSP 서비스에 국한된 아동의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아동에 대해 새로운 개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 관 기관은 아동의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해시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평가 및 사정 또는 서비스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 부모의 동의 없이는 해당 아동이 그러한 평가 및 사정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재평가에 대해 부모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부모의 동의 거부에 대해 반박하는 적법 절차를 사용하여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IFSP 서비스에 국한된 아동과 청소년의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아동에 대해 새로운 개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공립 교육 기관에서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밟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 부모의 응답이 없는 경우

새로운 재평가에 대해 부모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조정 및 적법 절차를 사용하여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초기 평가의 경우 처럼, 공립 교육 기관에서 새로운 재평가를 거부해도 IDEA 의무 조항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문서화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초기 평가를 위한 부모 동의 획득, 조기 개입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 재평가, 초기 평가를 위한 주 정부 보도 대상자의 부모 거취 파악 등을 위해 실행한 합리적인 노력들에 대해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공립 교육 기관에서 수행한 부모 동의 획득 노력들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통화 시도에 대한 상세 기록 및 통화 내용
- 부모에게 보낸 연락문 사본 및 받은 응답 그리고
- 부모의 자택 또는 직장 방문에 대한 상세 기록 및 방문 결과.

기타 동의 요건

공립 교육 기관에서 다음을 수행하기 이전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립 교육 기관이 아동에 대한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기 전 또는
- 다른 아동들의 부모로부터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다른 모든 아동들에게 실시한 검사나 평가를 해당 아동에게 실시하기 전.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특정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한 부모의 동의 거부를 이용하여 기타 다른 서비스, 혜택, 활동에 대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비로 아동을 사립 학교에 등록시킨 경우,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조정이나 적법 절차를 이용하여 아동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해당 아동이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모가 아동의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부모가 동의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

IDEA 가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초기 평가, 서비스 초기 조항 그리고 평가) 이외에도

메릴랜드주 법에 따라 IEP 팀이 다음과 같은 것을 하려면 부모의 문서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메릴랜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데 필요한 학점을 발행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아이를 등록시키는 것
- 메릴랜드 주의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대안 교육 평가에 적합한 아동을 알아내는 것
- COMAR 13A.08.04.05.에 기술된 대로 아동의 행동을 다루기 위해 IEP 에 제약 혹은 배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위 목록에 제시된 조치에 대해 학부모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IEP 팀은 학부모에게 IEP 팀 모임 최소한 오(5) 일 전에 동의권에 대해 문서상 통보를 해 다음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학부모는 제시된 조치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지니며
- 학부모가 IEP 팀 모임이 있기 전 평일 기준 십오(15) 일 이내에 동의서나 동의 거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IEP 팀이 제시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위 목록에 제시된 조치에 대해 학부모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IEP 팀은 교육 조항 §8-413 에 나오는 분쟁 해결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부모

지역의 담당 기관 또는 지역 학교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 아동을 대변할 수 있는 대리 부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한 이후에도 아동의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해당 아동이 메릴랜드 주 정부의 보호 대상자인 경우

대리 부모의 기준

- 아동의 이해 관계와 대립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아동에 대해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 조기 개입 또는 기타 아동 및 아동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주 정부의 공무원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 대리 부모 역할에 대해 공립 교육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역의 담당 기관 또는 지역 학교 시스템에서는 대리 부모의 지정을 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임명을 받은 담당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대리 부모는 다음과 같은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 아동에 대한 평가 및 사정
- 연례 평가 및 정기 검토를 포함한 아동의 IFSP 개발 및 도입
- 아동의 IEP 개발, 검토 및 개정
- IFSP 를 통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 IEP 를 통해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규정 제공

주 정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초기 평가 관련 특별 규정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이 주 정부의 보호 대상자이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아동의 장애 여부 결정을 위한 초기 평가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공립 교육 기관에서 아동의 부모를 찾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찾을 수 없는 경우
- 주 법률에 의거하여 부모의 권리가 박탈된 경우 또는
- 부모가 아닌 다른 개인이 교육적 결정 사항들과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 권한을 판사로부터 부여받은 경우

외부 교육 평가

부모가 공립 교육 기관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아동이 공립 교육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제 3자의 평가를 받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의

- 외부 교육 평가란, 자녀의 교육에 책임이 있는 공립 교육 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격있는 개인이 수행하는 테스트 및 사정 절차를 말합니다.
- 공공 비용이란 공립 교육 기관에서 평가에 대한 전체 비용을 부담하거나 해당 평가를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준하는 IDEA 에 근거하여 외부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립 교육 기관은 외부 교육 평가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 외부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
- 공립 교육 기관에서 적용하는 외부 교육 평가에 대한 심사 기준.

공립 교육 기관의 기준

공공 비용으로 외부 교육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외부 교육 평가를 받는 기준(평가 장소 및 평가자의 자격 포함)은 외부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립 교육 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와 동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준을 제외하고는,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공공 비용으로 받는 외부 교육 평가에 관련한 조건이나 기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공공 비용으로 외부 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부모가 공립 교육 기관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공공 비용으로 외부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받는 외부 교육 평가를 요청한 경우,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 해당 평가가 적절함을 보여주는 적법 절차 심의회를 열어야 합니다. 또는,
- 부모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외부 교육 평가가 공립 교육 기관의 기준과 맞지 않음을 공립 교육 기관이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증명할 수 없는 한 외부 교육 평가를 공공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에서 적법 절차 회의를 열었으며 그 최종 결정이 공립 교육 기관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이라면 부모에게 외부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는 있으나 그 비용은 공공 비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외부 교육 평가를 요청한 경우,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공립 기관의 평가를 거부하는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공공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외부 교육 평가를 불합리하게 지체시키거나 공립 교육 기관의 평가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법 절차 심의회를 열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되는 외부 평가

부모는 언제나 본인이 선택한 자격 전문인으로부터 자비로 외부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FSP/IEP 팀에서는 부모가 자비로 실시한 평가가 공립 교육 기관의 기준과 부합할 경우, 아동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해당 평가로부터 나온 결과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의 부담으로 실시한 외부 평가의 결과도 아동에 관한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사(ALJ)에 의한 평가 요청

행정 심의국(OAH)의 행정 판사(ALJ)가 적법 절차 심의회에 일환으로 외부 교육 평가를 요청할 경우, 해당 평가는 공공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부모는 아동의 기록을 열람하여 해당 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공립 교육 기관에 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동에 대한 정보 공개에 동의할 권리가 있으나, 일부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공립 교육 기관이 아동의 조기 개입 또는 교육 기록을 기밀로 유지해줄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할 경우에는 공립 교육 기관에 해당 교육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의

파기란 정보 사항에서 개인 식별자를 물리적으로 파기하거나 제거하여 더 이상 개인 신상 정보로 기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 기록이란 조기 개입 기록을 포함, 34 C.F.R. part 99(1974년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을 도입한 규정)에 나와 있는 교육 기록의 정의에 근거한 유형의 기록을 말합니다.

참여 기관이란 IDEA Part C 또는 Part B에 의거하여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 사용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개인 신상 정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아동의 부모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의 이름

- 아동의 주소지
-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
- 개인적 특성이나 기타 아동의 신원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정보

보호 규약

각 참여기관은 정보의 수집, 저장,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개인 신상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의 직원은 개인 신상 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 보호 규약 요건과 함께,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에서도 교육 기록 보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각 공립 교육 기관 직원은 개인 신상 정보의 기밀성과 관련한 주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참여 기관은 기관 내에서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의 성명과 직위 목록을 일반 열람용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동의: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개인 신상 정보가 IDEA 에 근거하여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참여 기관 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때, 또는 장애 아동에게 IDEA 에 근거한 FAPE 제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공개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범죄 신고와 관련한 조회 요청과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의 조치에 따른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FERPA 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부모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립 교육 기관은 FERPA 에 근거한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동의 없이 참여 기관에 교육 기록 상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MSDE 는 공립 교육 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정책 및 절차, 제재안을 개발해왔으며 이를 이용하여 IDEA 와 FERPA 에 의거한 개인 정보의 기밀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 정책과 절차의 준수를 보장합니다.

각 공립 교육 기관은 개인 신상 정보의 기밀성 요건에 대해 부모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주 내의 다양한 인구 집단의 모국어로 통지가 전달되고 있는 수준에 대한 설명
- 개인 신상 정보가 보관되고 있는 대상 아동 및 정보의 유형에 대한 설명
- 참여 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개인 신상 정보의 저장, 제 3 자에의 공개, 보유, 파기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요약
- 부모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설명
- FERPA 에 근거한 권리 및 34 C.F.R. §99 도입 규정을 포함하여, 이 정보와 관련한 부모와 아동의 모든 권리에 대한 설명

주요 장애 판정, 소재지 파악, 평가 활동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조치 대상 전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통지될 수 있는 발행 부수를 가진 신문이나 다른 매체, 또는 양쪽 모두에서 게재 또는 발표되어야 합니다.

기록 열람권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는 아동 및 가족의 경우 지역의 담당 기관에서 해당 아동의 조기 개입 기록의 초기 사본을 비용 부담 없이 부모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각 참여 기관은 장애 판정, 평가, 아동의 학교 배정, IFSP의 개발 및 도입 그리고 FAPE 제공에 대하여 공립 교육 기관에서 수집, 보관, 이용하는 아동과 관련한 어떠한 교육 기록이라도 부모가 조사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FSP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아동 및 가족의 경우 지역의 담당 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이 이루어진 지 10일이 지나기 전에, 불필요한 지체 없이 IFSP 관련 회의 또는 적법 절차 심의회 이전에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IEP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아동 및 가족의 경우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이 이루어진 지 45일이 지나기 전에, 불필요한 지체 없이 IEP 관련 회의 또는 적법 절차 심의회 이전에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섹션에 근거한, 교육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 공립 교육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공립 교육 기관에서 교육 기록 사본을 제공해주지 않아 부모가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기관에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대리인이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후견, 별거, 이혼과 같은 문제에 적용되는 주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과 관련된 기록들을 조사 및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공립 교육 기관에 고지되지 않는 한, 공립 교육 기관은 부모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열람 사실에 대한 기록

부모 및 공립 교육 기관의 담당 직원 이외에 IDEA의 Part C 또는 Part B에 근거하여 수집, 보관, 사용되는 교육 기록에 대해 접근 권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해당인의 이름, 접근 권한이 부여된 날짜, 교육 기록 사용 목적 등과 같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어떠한 교육 기록에 한 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자신들의 자녀와 관련된 정보만 열람 및 검토하거나 해당되는 특정 정보에 대해서만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각 공립 교육 기관은 부모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기관에서 수집, 보관, 사용한 교육 기록의 유형과 위치에 대한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 공립 교육 기관은 부모가 교육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교육 기록 사본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립 교육 기관은 교육 기록에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불러오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모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IDEA에 근거하여 수집, 보관, 사용되는 교육 기록 상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되었거나 아동의 사생활 보호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공립 교육 기관에 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합리적인 기한 내에 부모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에서 정보 수정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이를 부모에게 알리고 교육 기록 상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심의 요청권이 있다는 내용도 고지해야 합니다. 교육 기록 상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심의회는 34 C.F.R. §99.22에 있는 FERPA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은 요청에 따라 교육 기록 정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심의회를 열어, 해당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되었거나 아동의 사생활 보호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부모에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심의회 결과,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해당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되었거나 아동의 사생활 보호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그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고 그 수정 내용을 부모에게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심의회 결과,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해당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되었거나 아동의 사생활 보호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 부모는 정보에 대한 언급 사항이나 자신이 공립 교육 기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등 제시해놓은 설명서를 해당 기록 상에 첨부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공립 교육 기관에서 고지해주어야 합니다. 아동의 기록상에 있는 설명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해당 기록 또는 쟁의가 있던 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한, 해당 설명서도 아동에 대한 기록의 일부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 아동에 대한 기록 또는 쟁의가 있던 부분에 대한 사본을 요청하는 측에 설명서 내용도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 파기 절차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IDEA 에 근거하여 수집, 보관, 사용된 개인 신상 정보가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또는 교육 서비스 제공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부모에게 고지해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정보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학년, 출석 기록, 이수한 과목, 이수한 학년, 이수한 년도 등과 같은 영구적인 기록은 무기한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FERPA 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아동의 교육 기록과 관련한 부모의 권리는 해당 장애 아동이 주 법률에 의하여 금치산자로 판단되지 않는 한, 아동이 18 세에 이르렀을 때 아동 본인에게 이전됩니다. IDEA 의 Part B 에 의거한 부모의 권리가 성년에 이른 아동에게 이전될 경우, 교육 기록과 관련한 권리도 해당 아동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IDEA 에서 요구하는 모든 고지 사항들은 부모와 아동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년이 될 시 부모의 권리 이양”을 참조하십시오.

징계 관련 정보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비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장애 아동에 대해 내려진 현재 또는 이전의 징계 조치에 대한 설명서를 해당 아동의 기록에 포함시키고 그 징계 정보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는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 아동의 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아동이 받은 징계 조치 내용, 그리고 아동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타 정보와 아동과 관련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 아동의 현재 IEP 와 현재 또는 이전에 취해졌던 징계 조치에 대한 설명서도 송부되는 교육 기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 아동의 징계

아래 정보는 확장형 IFSP 또는 IEP 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3 세-21 세의 장애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공립 교육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했을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특정 절차와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아동이 학생 행동 규칙 위반으로 학기 중 10 일 이상 축출 조치를 받은 후에는,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해당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의

장애 아동의 징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됩니다.

- 규제 약물이란, 규제 약물법(21 U.S.C. 812(c))의 Section 202(c)에 있는 schedules I, II, III, IV, 또는 V 에 근거하여 정의된 약품이나 기타 물질을 말합니다.
- 불법 약물이란 규제 약물을 뜻하나, 허가받은 전문 의료인의 감독하에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IDEA 나 기타 연방법 조항에 의거한 권한을 갖고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하는 약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무기란 미국 연방법 title 18, section 930, 첫 번째 subsection (g)의 (2)단락에 의거한 '위험 무기'라는 용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심각한 신체 상해란, 상당한 사망 위험, 극도의 신체적 고통, 장기간에 걸친 명백한 용모 손상, 신체 일부/장기/지적 능력의 장기적인 기능 손상(18 U.S.C. 13645(h)(3))과 관련되는 신체 상해를 뜻합니다.

교직원의 권한

교직원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징계 정책에 따라 학생 행동 규칙을 위반한 장애 아동에 대해 위반 시 1 회 최대 10 일까지의 축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러한 축출 조치가 현재 배치에서 다음과 같은 배치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 임시 대안 교육 시설
- 기타 다른 시설
- 정학

축출(1 회 최대 10 일)이 누적되어 한 학년도에 10 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IEP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IFSP 또는 IEP 팀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생 행동 규칙을 위반한 장애 아동에게 배치 변경이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케이스별로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합니다. 배치 변경은 10 일(연속) 이상 축출 또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일련의 축출들을 포함합니다. 징계 조치로 인해 배치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공립 교육 기관은 해당 결정이 내려진 당일에 통지를 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절차상 보호 규약 문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 징후 판단:

학생 행동 규칙 위반으로 배치 변경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 일(수업일 기준) 이내에, 부모와 아동의 IFSP 팀/IEP 팀은 아동의 IFSP 나 IEP 를 포함한 모든 파일 상의 관련 정보,

교사 소견 및 부모가 제공한 관련 정보들을 검토하여 아동의 행동이 다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아동의 행동이 장애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그와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관련이 있는지.
- 공립 교육 기관에서 IFSP 또는 IEP 를 실행하지 못한 것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인지.

IEP 팀에서 위 내용 중 하나가 적용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아동의 문제 행동은 장애의 징후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문제 행동이 아동의 장애 징후인 경우, IFSP 팀 또는 IEP 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공립 교육 기관에서 기능적 행동 평가와 행동 조정 계획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 이들을 실행합니다.
- 아동의 행동 조정 계획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이 행동 조정 계획 수정의 일환으로 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아동은 원래 학교로 돌려보내되, 해당 아동이 약물, 무기, 심각한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임시 대안 교육 시설로 보내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아동의 문제 행동이 장애로 인한 징후가 아닌 경우, 학교 교직원은 비장애 아동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으나 적절한 교육 서비스가 계속되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배치 변경:

문제의 행동이 장애로 인한 징후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이 10 일 이상 축출 조치를 받아 배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 또는 약물, 무기, 심각한 신체 상해와 관련되어 임시 대안 교육 시설(IAES)로 보내지는 경우, 해당 아동은 다른 시설에서도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받아 자신의 IEP 에서 설정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해당되는 경우, 다시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아동은 기능적 행동 평가 및 행동 조정 서비스 그리고 해당 행동 위반 사례의 해결을 위해 고안된 문제 교정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IEP 팀은 적절한 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시 대안 교육 시설

아동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경우, 학교 교직원은 아동의 행동이 장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5 일간 임시 대안 교육 시설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아동이 학교, 학교 부지, 주 관할 또는 공립 교육 기관의 학교 행사장 내에서도나 이러한 장소로 가는 길에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 아동이 학교, 학교 부지, 주 관할 또는 공립 교육 기관의 학교 행사장에서 의도적으로 불법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을 판매 또는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
- 아동이 학교, 학교 부지, 주 관할 또는 공립 교육 기관의 학교 행사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힌 경우

징계 이의 신청

장애 징후 판정 또는 징계에 따른 배치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행정 심의회(OAH) 및 공립 교육 기관에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해당 아동을 그대로 두는 것이 다른 아동이나 타인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도 OAH 및 부모를 상대로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규약서의 "의견차 해결" 섹션에 나타나 있는 절차를 따라 행정 판사(ALJ)가 적법 절차 심의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회는 적법 절차 이의가 제기된 날짜로부터 20 일(수업일 기준) 이내에 열려야 하며 심의회 개최 후 10 일(수업일 기준) 후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 이의 신청에 대해 ALJ 는 다음과 같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아동이 축출된 이전 배치로 돌려 보내기.
- ALJ 가 아동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아동 또는 타인에게 위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45 일 간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시설로 보내도록 명령.

부모나 공립 교육 기관에서 적법 절차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에서 달리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행정 판사의 결정이 내려질 때 또는 규정 기간(최대 45 일(수업일 기준))이 만료될 때, 둘 중 하나가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아동은 임시 대안 교육 시설에 남아 있게 됩니다.

장애 여부를 아직 판정받지 않은 아동

특수 교육에 대한 장애 판정을 아직 받지 않았으나 규정 및 행동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연관된 아동은, 해당 공립 교육 기관에서 그 위반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아동의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모든 보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징계 원인이 된 행위 발생 이전에 공립 교육 기관에서 아동의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모가 공립 교육 기관의 교감 또는 행정 담당자나 아동의 담임 교사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
- 부모가 평가를 요청한 경우
- 아동의 교사나 기타 학교 교직원이 해당 아동이 보이고 있는 행동 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특수 교육 담당자 또는 공립 교육 기관의 기타 감독자에게 직접 표명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립 교육 기관에서 아동의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부모가 아동에 대한 공립 교육 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 부모가 아동에 대한 공립 교육 기관의 특수 교육 제공을 거부한 경우 또는
- 아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IDEA 에 의거한 장애 아동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공립 교육 기관이 징계 조치 이전에 아동의 장애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해당 아동은 비장애 아동이 그와 유사한 행위를 범했을 때와 동일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징계 조치를 받고 있는 동안에 부모가 아동에 대한 장애 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속히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아동은 학교 당국에서 결정한 배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공립 교육 기관의 평가와 부모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아동이 장애 아동으로 판정된 경우,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징계와 관련한 모든 절차상 보호 규약을 적용시킵니다.

법 집행 기관과 사법 당국에의 의뢰 및 이들 기관의 조치

IDEA 는 공립 교육 기관이 적절한 당국 그리고 법 집행 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사법 당국은 장애 아동의 범죄에 대해 연방법 및 주정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범죄를 신고하는 모든 기관은 메릴랜드 규정 코드의 학생 기록 조항(COMAR 13A.08.02, Student Records)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모의 동의나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부모 동의 예외 조항에 따라 아동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해당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독자적으로 공공 비용으로 아동을 사립 학교에 보낸 경우

IDEA 규정 상 공립 교육 기관이 무상 공교육(FAPE)의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장애 아동을 사립학교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받는 조기 개입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등과 같은 교육 비용을 공립 교육 기관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IDEA 규정 상 공립 교육 기관이 무상 공교육(FAPE)의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장애 아동을 사립학교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받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등과 같은 교육 비용을 공립 교육 기관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해당 공립 교육 기관은 연방 규제법에 따라 해당 아동을 부모가 사립학교에 배치한 장애 아동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FAPE의 이용 가능성과 재정상의 책임과 관련한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 사이의 의견차에 대해서는 IDEA 에 의거한 적법 절차 이의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의견차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장애 아동이 이미 공립 교육 기관 관할 하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부모가 공립 교육 기관의 동의나 의뢰 없이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아동을 등록시킨 경우, ALJ 또는 법원에서 사립학교 등록에 앞서 공립 교육 기관이 FAPE의 기회를 적절한 시기에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립학교 배치가 적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ALJ 또는 법원은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해당 등록 비용을 부모에게 배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LJ 나 법원은 부모의 사립학교 배치가 공립 교육 기관에서 제공한 교육에 적용되는 주 정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상 한도

다음과 같은 경우, ALJ 나 법원에서는 배상액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아동을 공립 학교에서 전학시키기 이전, 가장 최근에 참석한 IEP 팀 회의에서 FAPE 을 제공하기 위한 공립 교육 기관의 학교 배치를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부모의 우려 사항들과 공공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 학교에 등록시키겠다는 의사 포함)를 IEP 팀에 표명하지 않은 경우
- 부모가 아동을 공립 학교에서 전학시키기 최소 10 일(공휴일과 겹치는 영업일 포함) 이전에, 아동의 공립 학교 배치와 관련한 우려 사항들과 아동에 대한 전학 의사를 공립 교육 기관에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부모가 자녀를 공립 학교에서 전학시키기에 앞서, 공립 교육 기관이 사전 통지 요건에 따라 자녀를 평가하겠다는 의사(평가 목적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진술 포함)를 부모에게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평가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사법 기관에서 부모의 행동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위에 설명한 통지 요건 외에도, 배상 금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상액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공립 교육 기관에서 부모의 통지를 방해한 경우
 - 부모가 위에 서술된 IDEA 통지 요건 하의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통지 요건 준수가 아동에게 물리적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한 부모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부모가 문맹이어서 영어로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 위에 서술된 통지 요건의 준수로 인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경우

성년이 될 시 부모의 권리 이양

메릴랜드 주에서는 장애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지라도 부모의 권리를 이양시키지 않으나,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법에 따르면,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IDEA 에 근거한 모든 부모의 권리가 장애 아동에게 이양됩니다. 아동이 18 세에 이르렀고 주법에 따라 금지산자로 판정받지 않았으며 또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아동이 대리 부모를 지명하는 대신 자신에게 권리를 이양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이전 년도에 공립 교육 기관에서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부모를 참여시키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부모가 특수 교육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단호히 거절한 경우
- 한 쪽 또는 양쪽 부모가 장기 입원, 시설 수용, 심각한 질병이나 질환 등으로 인해 특수 교육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여 아동에게의 권리 이양에 동의한 경우

- 부모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수 교육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아동에게의 권리 이양에 동의한 경우
- 아동이 부모의 집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공립 교육 기관의 보호나 후견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장애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18 세에 이른 해당 자녀에게 권리를 이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자녀가 주법에 의거한 금치산자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 양 측 모두 권리 이양에 대한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 및 주 정부의 법령에 따라 장애 아동에 대해 대리 부모가 그 의사를 대변해 온 경우,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연방 및 주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면 통지를 아동과 대리 부모 양 측 모두에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이 주법에 의거한 금치산자로 판정받지 않았으며 또 그 아동이 권리 이양을 요청한 경우, IDEA 에 의거하여 대리 부모에게 부여되었던 모든 기타 권리들은 해당 아동에게 이양되어야 합니다.

의견차 해결

다음은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또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서비스에 대해 발생한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 사이의 의견차 해소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해결 방법에는 조정, 주 정부 상대 이의 제기, 적법 절차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조정

조정이란 장애 아동의 부모와 아동의 교육에 대해 책임이 있는 공립 교육 기관 사이의 의견차를 해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IEP 팀 회의 중 부모가 아동의 IEP 또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IEP 팀은 아래 사항을 부모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요청된 조정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
- 부모가 조정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
-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무료 변호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및 기타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및 관련 서비스

부모는 조정 관련 정보를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용하는 모국어를 지역 학교 시스템 재학생의 일 퍼센트 (1%)가 사용할 경우, IEP 팀은 부모의 요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 언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일 퍼센트 번역 요구 조건은 동 문서의 조정 항목에서도 논의됩니다.

효과적인 조정 절차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행정 심의국(OAH) 직원이 해당 조정을 수행합니다. OAH에서 선발한 직원은 조정 대상자들과 개인적 또는 직업적으로 이해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조정은 아동의 조기 개입 또는 교육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부모나 공립 교육 기관에 대해, 조정 절차를 권장하기 위한 부모 면담 비용을 포함하여 어떠한 비용 부담도 지우지 않습니다.
-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또는 교육에 대해 책임이 있는 공립 교육 기관과 OAH 에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원하는 부모들을 위해 공립 교육 기관과 MSDE 웹사이트(www.marylandpublicschools.org)에서 해당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립 교육 기관의 특수 교육과 또는 메릴랜드주 교육부의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전화: 410-767-77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 또는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조정 절차 중 변호사를 대동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조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서면 신청서가 접수된 지 20 일 이내에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 측에 편리한 장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조정 중에 일어나는 논의 사항은 대외비이며 후속 적법 절차 심의회나 민사 소송의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부모 또는 공립 교육 기관은 조정 개시 전에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은 이러한 유형의 사례에 심리 권한이 있는 주 법원이나 연방 지방 법원에서 강제성이 있는 서면 합의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공립 교육 기관은 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에 대한 심의회 관련 권한을 부정하거나 이를 지연시키는 데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조정 절차 권장을 위한 회의

공립 교육 기관은 조정 절차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모를, 부모 측에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하여 조정 절차의 장점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상대 이의와 적법 절차 이의의 비교

조정 외에도, 부모는 공립 교육 기관과의 의견차 해소를 위해 주 정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기 다른 규칙과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IDEA 규정에서는 주 정부 상대 이의 제기와 적법 절차 이의 제기에 대해 각기 다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은 공립 교육 기관의 IDEA 규정 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주 정부를 상대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장애 판정, 평가, 조기 개입 서비스 또는 학교 배치, 또는 아동에 대한 무상 공교육(FAPE) 제공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적법 절차 이의 제기는 부모나 공립 교육 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MSDE 직원은 그 기한이 적절히 연장되지 않는 한, 주 정부 상대 이의 제기건을 60 일 이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ALJ는 적법 절차 이의를 심의하고(조정 절차나 문제 해결 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ALJ가 부모나 공립 교육 기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한 해결 기간 종료 후 45 일 이내에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옵션들의 개요 및 비교에 대해서는, 본 규약서의 첨부를 참조하십시오.

주 정부 상대 이의

개인 및 기관은 메릴랜드 주 교육부(MSDE)를 상대로 주 정부 상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의서가 IDEA 규정에 의거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이 조기 개입 또는 특수 교육 요건과 관련한 연방 또는 주 법규를 위반했거나 해당 공립 교육 기관이 적법 절차 심의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이 주 정부를 상대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SDE 를 상대로 이의 신청서 보내야 할 주소는 Assistant State Superintendent,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Early Intervention Services, MSDE,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1 입니다. MSDE 를 상대로 주 정부 상대 이의를 제기한 개인 또는 기관은 이와 동시에 해당 공립 교육 기관에도 이의서 사본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위한 상세 절차와 양식에 대해서는, MSDE 웹사이트(www.marylandpublicschools.org)를 참조하시거나 이의 심사 및 적법 절차 심의국(전화: 410-767-777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부 상대 이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공립 교육 기관에서 연방 또는 주 법규의 요건을 위반했다는 진술.
- 그러한 진술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 내용.
- 이의 신청을 하는 개인/기관의 서명 및 연락처 정보.
- 주 정부 상대 이의 신청이 특정 아동과 관련한 위반 사항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아동의 성명 및 주소.
 - 해당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명.
 - 집이 없는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정보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명.
 - 해당 아동이 갖고 있는 문제의 성격과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 관계에 대한 상세 설명.
 - 주 정부 상대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

주 정부 상대 이의 제기 사항이 주 정부가 이의를 접수한 때로부터 1 년 이상 이전의 시점에 발생한 위반 사항이어서는 안됩니다. MSDE 는 이의 신청 접수 60 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이의 사항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이 조정을 시도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한 연장에 합의한 경우

MSDE 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위탁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의 제기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 정부 대상 이의 제기와 관련된 추가 정보 제출 기회를 줍니다.
-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해당 공립 교육 기관이 연방법 및 주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이의 신청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설명 및 사실 관계 확인 내용과 그에 따른 결론이 적혀 있는 서면 결정문을 이의 제기자와 공립 교육 기관에 발부해 주어야 합니다.

서면 결정문은 최종 결정에 대한 사유와, 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방법, 협상,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최종 결정의 효과적인 실행 절차도 필요에 따라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MSDE 에서 공립 교육 기관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최종 서면

결정문에는 해당 공립 교육 기관이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의 거부에 대해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그리고 장애 아동을 위한 미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정부 상대 이의의 해결

의견차 해소를 위해서는 조정 절차와 함께 다소 덜 형식적인 다른 방법들도 이용 가능하며 또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이의가 해결될 경우 MSDE는 연방 규정에 따른 조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법 절차 심의회에 제기된 주 정부 상대 이의 신청의 해결

MSDE가 적법 절차 심의회 일부이기도 한 주 정부 상대 이의 제기를 접수받았거나 주 정부 상대 이의의 많은 내용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심의회에도 해당되는 것일 경우, MSDE는 적법 절차 심의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 상대 이의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 절차 심의회에 속하지 않는 주 정부 상대 이의 제기 사항은 위에서 서술한 기한과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 정부 상대 이의 제기 사항이 이전에 적법절차 심의회에서 결론이 났었던 사항이고 그 당사자들도 동일하다면, 해당 심의회 결정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며 MSDE는 이의 제기자에게 이러한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적법 절차 이의

부모 또는 공립 교육 기관은 아동에 대한 장애 판정, 평가, 조기 개입 서비스 또는 학교 배치, 또는 아동에 대한 무상 공교육(FAPE) 제공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적법 절차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이의는 부모 또는 공립 교육 기관이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던 이의 제기 근거 행위가 2년 이내에 발생했던 위반 사항에 대해 제기되어야 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이 적법 절차 이외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허위 표시하거나 IDEA에 근거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부모가 이의 신청을 기한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공립 교육 기관(혹은 양측의 변호사)은 서로의 상대방과 OAH에 적법 절차 이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서는 아래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대외비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이의 제기를 하려는 부모들은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립 교육 기관(자녀가 다녔던 학교)이나 MSDE 웹사이트(www.marylandpublicschools.org)에서 조정 및 적법 절차 이의서 양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립 교육 기관의 조기 개입과, 특수 교육과 또는 MSDE의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전화: 410-767-77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법 절차 이의서의 구비 요건

적법 절차 이의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아동의 이름.
- 아동의 거주지 주소(집이 없는 아동의 경우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정보).
- 해당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명.
-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립 교육 기관명(지역 학교 시스템)
- 제안되었거나 거부되었던 발의 또는 변경과 관련한 아동의 문제 사항 설명(문제와 관련한 사실 관계 포함).
-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의서 제출 당시 당사자가 알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부모 또는 공립 교육 기관은 양측(또는 양측의 변호사)이 이러한 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 절차 이의를 신청할 때까지 적법 절차 심의회를 열 수 없습니다.

적법 절차 이의에 대한 답변

적법 절차 이의가 접수되면, 해당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립 교육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부모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들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 부모에게 절차상 보호 규약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교육 기관이 부모가 적법 절차 이의서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사전 통지문을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립 교육 기관은 이의서 수령 후 10 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답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해당 조치 시행을 제안 또는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 해당 기관이 고려했었던 모든 대안들과 그 대안들이 기각된 이유에 대한 설명
- 절차상 보호 규약에 의하여 장애 학생의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보호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 통지서가 아동의 장애 여부 평가를 위한 초기 의뢰서가 아닐 경우 절차상 보호 규약 사본을 얻을 수 있는 방법
- 부모가 IDEA 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 연락처.

일부 경우에는 이러한 답변서에서 해당 공립 교육 기관이 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서가 이의 제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법 절차 이의 제기를 받은 당사자(부모 또는 공립 교육 기관)는 적법 절차 이의서를 받은 지 10 일 이내에 해당 이의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답변서를 상대방에게 우송해주어야 합니다.

통지의 충분 요건

적법 절차 이의서는 이의서 수령 당사자가 15 일 이내에 OAH 및 상대방에게 해당 이의서의 내용 요건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는 한, 이의서의 내용 요건은 충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의서가 충분한 내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통지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OAH가 적법 절차 이의서의 내용 요건을 검토 및 판단하여 양측에 서면으로 즉각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은 문제 해결 회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는 경우에 한해, 또는 OAH에서 적법 절차 심의회가 열리기 최소 5 일 이전에 이를 승인해준 경우에만 적법 절차 심의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적법 절차 이의서를 제출할 경우 문제 해결 회의와 적법 절차 심의회 일정은 수정된 이의서 신청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소송 진행 기간 동안의 아동 배치 상태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아동의 현재 조기 개입 또는 학교 배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행정적 또는 사법적 소송이 공립 학교 입학 신청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경우, 부모의 동의 하에 아동은 모든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공공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받아야 합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 또는 학교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는 부모의 의견에 ALJ가 동의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이후 항소 진행 기간 동안에도 변경된 현행 아동의 배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

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서를 수령한지 15 일 이내에 그리고 적법 절차 심의회 개시 이전에, 공립 교육 기관은 이의서에 제기된 문제와 관련한 사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 팀 또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의 관련 구성원들 및 부모와의 회의를 가져야 합니다. 회의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립 교육 기관을 대표하는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표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 부모가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는 한 공립 교육 기관 역시 변호사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 양측은 회의 참석에 적합한 IFSP 또는 IEP 팀 구성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부모가 적법 절차 이의서 제기 사항 및 이의를 제기하게 된 사실 관계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립 교육 기관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문제 해결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이 문제 해결 회의를 갖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이 조정 절차를 갖기로 합의한 경우
- 공립 교육 기관이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공립 교육 기관이 이의서 접수 이후 30 일(문제 해결 기간) 이내에 부모가 만족할 수준까지 이의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 절차 심의회를 열 수 있습니다.

30 일간의 문제 해결 기간이 종료되면 45 일간의 최종 결정 기간이 개시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30 일 해결 기간 내 문제 조정” 또는 “신속 일정”의 경우가 적용되는 상황은 예외로 합니다.

30 일 해결 기간 내 문제 조정:

부모와 교육 기관이 문제 해결 과정을 연장하기로 합의했거나 문제 해결 과정을 갖지 않기로 했거나 조정 절차를 갖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가 문제 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을 지연 시키며 문제 해결 회의 이후에 열리는 적법 절차 심의회 일정도 지연시키게 됩니다.

해당 공립 교육 기관이 부모의 문제 해결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 노력 내용을 문서화 한 후에도 부모를 참석시키지 못한 경우, 30 일의 해결 기간 종료 시 해당 교육 기관은 ALJ 에 적법 절차 이의 신청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립 교육 기관에서 부모의 참석을 종용했던 노력을 문서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상호 합의된 시간 및 장소를 마련하려 시도했던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화 통화 또는 통화 시도 횟수에 대한 자세한 기록 및 통화 결과 내용
- 부모에게 보낸 연락문 사본 및 받은 응답
- 부모의 자택 또는 직장 방문에 대한 상세 기록 및 방문 결과.

공립 교육 기관이 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서를 접수한지 15 일 이내에 문제 해결 회의를 열지 않는 경우 또는 문제 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심의회를 열어 4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이 문제 해결 회의를 갖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적법 절차 심의 회의의 45 일 일정이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조정 또는 문제 해결 회의를 시작한 후 그리고 30 일 간의 문제 해결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이 서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적법 절차 심의회를 위한 45 일 일정이 그 합의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이 조정 절차를 갖기로 합의한 경우, 30 일 해결 기간 종료 시 양측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조정을 계속 하겠다고 서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공립 교육 기관 중 한 쪽이 조정 절차를 중단할 시에는 그 다음 날부터 45 일의 적법 절차 심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문제 해결 합의

문제 해결 회의에서 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교육 기관의 의사 결정권이 있는 책임자와 부모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 관할 지역 내 주 법원(이러한 사건을 심의할 권한이 있는 주 법원)이나 연방 지방 법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양측이 문제 해결 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경우, 부모와 공립 교육 기관 중 어느 한 쪽이 합의문을 3 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의회

분쟁에 연관된 부모 또는 공립 교육 기관은 적법 절차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적법 절차 심의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행정 판사(ALJ)

- 행정 판사는 행정 심의회(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OAH)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행정 판사는 심의회의 객관성과 충돌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 행정 판사는 IDEA 조항과 IDEA 관련 연방 및 주의 규정, 그리고 IDEA 에 대한 법률 해석에 대해 잘 알고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 행정 판사는 심의회를 진행하고 적절하고 표준적인 법률 행위로서의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 이의 대상 문제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부모 또는 공립 교육 기관)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이의서에 제기되지 않은 문제를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의회 관련 권리 사항

모든 적법 절차 심의회(IDEA 징계 절차에 대한 심의회 포함)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주행정법 메릴랜드 주 주석 조항(State Government Article §9-1607.1, Annotated Code of Maryland)에 의거, 심의회에서 본인이 직접 변론하거나 이를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 장애 아동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과 변호사를 대동하여 이들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증거 제출, 대질, 반대 심문을 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심의회 개최 5 일 전까지 자신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가 심의회에 제출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심의회 기록을 입수할 수 있는 권리, 부모의 선택에 따라 전자 축어식 심의회 기록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인정문 및 판결에 대한 기록을 입수할 수 있는 권리. 부모의 선택에 따라 전자식 기록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공개:

당사자는 심의회 개최 5 일전까지, 당시까지 작성된 모든 평가 자료, 부모 또는 공립 교육 기관에서 심의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평가 자료에 기초한 권고 사항 등을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ALJ 는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가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관련

평가 자료나 권고 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

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아동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 심의회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심의회, 사실 인정문, 판결에 대한 기록을 무료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판결

ALJ 는 아동이 무상 공교육(FAPE)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해야 합니다. 절차상의 위반을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ALJ 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아동이 FAPE 을 받지 않았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절차상 부적절성으로 인해 아동이 FAPE 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 절차상 부적절성으로 인해 FAPE 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모의 기회를 침해당한 경우
- 절차상 부적절성으로 인해 교육 혜택의 박탈을 초래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이외에도, ALJ 는 IDEA 의 Part B(34 CFR 300.500 에서 300.536 까지)에 근거한 연방 규정의 절차상 보호 규약 부분에 나타나 있는 요건들을 준수하도록 공립 교육 기관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적법 절차 이의 제기:

IDEA 의 절차상 보호 규약에서는, 이미 제기된 적법 절차 이의와 별도로 부모가 또 다른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의회 일정 및 편의

문제 해결 기간 30 일이 만료된 이후 45 일 이내로, 또는 “30 일 해결 기간 내 문제 조정”이나 “신속 일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정 기간 만료 후 45 일 이내.

- 심의회 의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 판결문 사본이 관련 당사자 양측에 우송됩니다.

ALJ 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45 일 기한의 연장 요청을 승인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심의회는 부모와 아동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 열려야 합니다.

신속 일정:

다음과 같은 사안에 관련하여 장애 아동을 위한 적법 절차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공립 교육 기관은 신속한 심의회 일정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 현재 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재학하고 있지 않은 장애 아동.
- 장애 아동의 임시 대안 교육 시설 배치.
- 장애 징후 판정

심의회는 이의서가 제출된 후 20 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ALJ 는 심의회 후 1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문제 해결 회의는 이의서 접수 후 7 일 이내에 열려야 하며 적법 절차

이의서를 받은 지 15 일 이내에 양측에게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심의회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심의회 판결의 최종 효력

행정법 판사의 판결은 관련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 한 최종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심의회에 제출된 이의와 관련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

심의회 사실 인정문과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ALJ의 판결 후 120 일 이내에, 관할 지역의 주 법원 혹은 연방 지방 법원에 사안의 경중과 무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민사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 적법 절차 심의회 기록을 접수합니다.
- 부모 또는 공립 교육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거를 심의합니다.
- 증거 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을 결정의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 법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 조치를 명령합니다.

IDEA의 Part B의 어떠한 조항도 미국 헌법, 미국 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Title V(Section 504), 또는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법에 근거한 이들의 권리, 절차, 개선책 등을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법률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모 또는 공립 교육 기관은, 행정 심의회(OAH)과의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가능한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가 IDEA 법 규정과 중복되는 다른 법규에 근거하여 해결책을 구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법규에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는 곧장 법원에 가기 전에 부모가 IDEA에 근거한 행정적 대안(적법 절차 이의 제기, 문제 해결 회의, 공평한 적법 절차 심의회 절차 등)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

IDEA에 의거한 모든 행위나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다음을 대상으로 적절한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 승소인인 장애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 경솔하고 불합리하며 근거없는 이의나 이에 따른 후속적인 소송 사유를 제기하는 부모의 변호인, 또는 소송이 분명 경솔하고 불합리하며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부모의 변호인을 상대로 MSDE 나 기타 공립 교육 기관이 승소한 경우
- 부모 또는 부모의 변호인의 이의 제기 또는 이에 따른 소송 사유가 괴롭힘, 불필요한 지연 초래, 불필요한 소송 비용 증가 등과 같은 부적절한 의도로 나타난 경우에서 MSDE 또는 기타 공립 교육 기관이 승소한 경우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제공받은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에 대하여 해당 소송이 발생한 지역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어떠한 보너스나 배율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그 비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적법 절차 심의회 또는 법원 소송의 결과로 소집된 것이 아닌 IFSP 나 IEP 팀 회의의 경우
-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밟게 된 경우
- 문제 해결 회의의 경우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모에게 서면 합의가 제의된 후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 이러한 제의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68 조(Rule 68,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이루어졌거나 행정 소송의 경우 소송 시작 10 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 이 제의가 10 일 이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심의회를 통해 부모가 얻은 구제안이 합의 제의보다 부모에게 더 유리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부모가 합의 제의를 거절할 만한 타당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 비용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부모 또는 부모의 변호인이 분쟁 해결을 지나치게 지연시킨 경우
-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비슷한 능력, 지명도, 경험을 가진 해당 지역 변호사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의 시간당 요율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 소송의 성격에 비해 시간과 서비스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했던 경우
- 변호사가 적법 절차 심의회 요청서 제출 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 공립 교육 기관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 경우
- 절차상 보호 규약 요건이 위반된 경우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는 IDEA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부모는 이 사항에 대해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첨부:
IDEA 분쟁 해결 과정 비교표

| | 조정 | 적법 절차 이의 제기 | 문제 해결 과정 | 주 정부 상대 이의 제기 |
|--------------|--|---|--|---|
| 진행을 주도하는 주체 | 부모 또는 공립 교육 기관. 양측 모두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부모 또는 공립 교육 기관. | 양측이 문제 해결 회의를 갖지 말자거나 조정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공립 교육 기관은 적법 절차 이의서 접수시 문제 해결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 개인 또는 기관. 타 주의 개인과 기관 포함. |
| 이의 제기 시효 | 정해진 바 없음 | 양측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알았거나 알고 있었어야 했던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¹ | 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 제기로 자동 발생 | 주장하는 위반 사실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
| 해결될 수 있는 문제 | Part 300 규정에 따라 적법 절차 이의가 제기되기 전에 발생한 문제들을 포함한 모든 사항(예외 규정 있음). ² | 장애 판정, 평가, 학교 배치, 무상 공교육 제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예외 규정 있음). | 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동일함. | IDEA의 Part B 또는 Part 300 위반 혐의 사항 |
| 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 | 정해진 바 없음 | 별도의 기간 연장이 없는 한 문제 해결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 ^{3,4} | 양측이 문제 해결 회의를 갖지 말자거나 조정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공립 교육 기관은 적법 절차 이의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문제 해결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양측이 달리 합의하거나 문제 해결 회의에 불참하였거나 공립 교육 기관이 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문제 해결 회의를 열지 않는 한, 문제 해결 기간은 적법 절차 이의서 수령 후 30일입니다. ^{3,5,6,7} | 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이의서 수령 후 60일. ⁸ |

| | | | | |
|----------|--|-----------------------------------|--|--|
| 문제 해결 주체 | 부모 및 공립 교육기관 그리고 중재자. 조정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양측은 어떠한 합의점에라도 도달해야 합니다. | 심의국(Hearing Office)/행정 판사(ALJ) | 부모 및 공립 교육 기관. 양측은 어떠한 합의점에라도 도달해야 합니다. | 메릴랜드 주 교육부(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⁹ |
|----------|--|-----------------------------------|--|--|

¹ 기한은 부모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 절차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립 교육 기관이 적법 절차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허위 표시를 한 경우, (2) IDEA Part 300 에 따라 공립 교육 기관에서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34 C.F.R. §300.511(f)).

² 다음 사항은 예외의 경우입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의 초기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의사를 번복시키기 위해 공립 교육 기관에서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34 C.F.R. §300.300(b)(3)). 부모가 독자적으로 사립 학교에 입학시킨 아동이나 홈스쿨링을 하는 아동에 대한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의사를 번복시키기 위해 공립 교육 기관에서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34 C.F.R. §300.300(c)(4)(i)).

부모가 독자적으로 사립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킨 경우, 해당 부모가 적법 절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공립 교육 기관에서 아동 찾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34 C.F.R. §300.140). 공립 교육 기관이 수준 높은 교사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이는 적법 절차 이의 제기 대상이 아니라 주교육부(State Education Agency: SEA)를 상대로 주 정부 상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³ 징계 절차에 대한 신속 일정 심의회를 청구하는 적법 절차 이의가 제기되었거나 해당 아동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 해결 기한은 15 일(회의는 7 일 이내 개최)입니다. 만약 문제가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심의회 요청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의회를 열어야 하며 심의회가 열린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34 C.F.R. §300.532(c) 및 COMAR 13A.05.01.15).

⁴ 심의관/ALJ 는 해당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요청에 의해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34 C.F.R. §300.516(c)).

⁵ 법 규정에서는 30 일 해결 기간 내에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적법 절차 심의회의 45 일은 심의회 그 다음날로부터 시작됩니다. (1) 양측이 문제 해결 회의를 갖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2) 30 일 문제 해결 기간 이전에 조정 절차나 문제 해결 회의가 개시된 후 양측이 서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3) 양측이 서면으로 30 일 문제 해결 기간 경과 후 조정 절차를 계속 갖기로 서면 합의하였으나 후에 어느 한 쪽이 조정을 철회한 경우(34 C.F.R. §300.510 (c)).

⁶ 부모의 문제 해결 회의 불참으로 문제 해결 과정과 적법 절차 심의회 일정이 지연된 경우(34 C.F.R. §300.510(b)(3)).

⁷ 공립 교육 기관이 부모의 적법 절차 이의서 수령 후 15 일 이내에 문제 해결 회의를 열지 않거나 해당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부모는 ALJ 가 적법 절차 심의회 일정을 개시하도록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⁸ 주 정부 상대 이의 제기에 대한 일정은, 특정 이의나 부모(혹은 개인이나 기관. 이 개인이나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조정 절차는 분쟁 해결 방안이 있는 경우)와 관련된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립 교육 기관이 조정 절차나 기타 분쟁 해결을 위한 여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기한 연장에 동의한다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해당 주에서 가능한 경우)(34 C.F.R. §300.152(b)(1)).

⁹ MSDE 의 이의 제기 절차는 공립 교육 기관이 자신의 재량으로 이의 내용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모와 학교가 자발적으로 조정 절차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기회 등과 같은, 공립 교육 기관이 해당 이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34 C.F.R. §300.152(a)(3)). 경우에 따라서 이의 제기자와 해당 공립 교육 기관은 MSDE 가 직접 해결할 필요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Early Intervention Services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1
410-767-0249 (phone)
410-333-1571 (fax)
<http://www.marylandpublicschools.org>